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병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403

발의연월일: 2023. 4. 17.

발 의 자: 안병길 · 전봉민 · 이헌승

김태호 · 김희곤 · 류성걸

권명호 • 이주환 • 정동만

구자근 • 박대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 어 관련 법제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형의 경우 집행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자 함(안 제77 조, 제78조 및 제80조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7조 중 "형을"을 "형(사형을 제외한다)을"로 한다.

제78조의 조 번호 "第78條"를 "제78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다.

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0조(시효의 중단) 시효는 징역,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, 벌금, 과료,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형의 형의 시효 폐지에 관한 적용례) 제77조, 제78조제1호,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이법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했 아 혅 개 정 제77조(형의 시효의 효과) 형을 제77조(형의 시효의 효과) 형(사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 | 형을 제외한다)을 -----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 다. 第78條(형의 시효의 기간) 시효는 제78조(형의 시효의 기간) -----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. 1. 사형: 30년 1. <삭 제> 2. ~ 7. (생략) 2. ~ 7. (현행과 같음) 第80條(時效의 中斷) 時效는 死刑, | 제80조(시효의 중단) 시효는 징역, 懲役, 禁錮와 拘留에 있어서는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 를 체포함으로, 벌금, 과료, 몰 受刑者를 逮捕합으로, 罰金, 科 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 料, 沒收와 追徵에 있어서는 强 制處分을 開始함으로 因하여 中 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 斷된다. 다.